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

세종 건설클레임센터 Monthly Insight 11월호

2026.11.23

본격적인 겨울 공사철이 시작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국토관리청·산하기관 등 12개 기관과 함께 11월 16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전국 2,946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대상 현장의 61%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현장입니다.

제도도 바뀌었습니다. 2026년 10월 27일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악천후 사유에 폭염과 한파가 명시되었습니다(제70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공포일부터 바로 시행되어 이번 겨울 한파부터 적용됩니다. 시공사(도급인)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올겨울은 한파로 인한 작업중지가 공기연장 협의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는 첫 겨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제도가 생겼다고 해서 공기와 비용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 테이블에서는 “그날 정말 작업이 불가능했는가”, “그 공종이 주공정이었는가”, “계약 당시 이미 반영된 동절기 조건을 넘어선 것인가”, “보온·가열 비용은 원래 내역에 들어 있던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업계에서도 작업 여건이 나빠져 생산성이 떨어졌을 때 그 손실을 시공사가 모두 떠안아야 하는지, 아니면 원인과 책임에 따라 발주자와 나누어 부담해야 하는지가 주요 논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한파로 멈춘 날과 떨어진 생산성을 공기와 비용으로 설명하기 위해 현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를 실제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관련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한파·폭설 대비 전국 건설현장 2,946곳 안전점검 (2026.11.13)
▶아주경제, 건설현장 손실 누가 책임지나…건설산업 상생 해법 모색 (2026.11.10)
▶건설타임즈, 수주 반등에도 건설업 체감경기 악화…대금 회수 부담 커져 (2026.11.10)

이번 달 핵심 메시지

1. “추웠다”가 아니라 “기준에 따라 멈췄다”여야 합니다

한파 공기연장의 출발점은 기온 자체가 아니라, 계약·작업계획서에 정한 작업중지 기준과 그날의 실제 기상·현장 온도 기록, 그리고 작업중지 지시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지입니다. 기준 없이 사후에 “추워서 못 했다”고 주장하면 설득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2. 계약 공정표에 이미 반영된 것과 예상을 넘어선 한파를 구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계약 공정표에는 일정 일수의 동절기 작업불능일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협의 대상은 그 반영분을 넘어선 부분입니다. 계약 당시 반영 일수와 산정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청구 범위를 정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3. 멈춘 날뿐 아니라 '느려진 날'과 '늘어난 비용'도 기록해야 합니다

한파의 영향은 작업중지일보다 보온양생 기간 연장, 방한 휴식 확대에 따른 생산성 저하, 보온·가열 비용 증가로 더 크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작업을 멈춘 날만 기록해서는 부족하고, 양생 기간이 며칠 늘었는지, 하루 작업량이 얼마나 줄었는지, 보온·가열에 비용이 얼마나 더 들었는지를 함께 남겨야 한파의 영향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실무 이슈

1. 한파 공기연장 협의에서 반복되는 질문

발주자와 감리가 한파 공기연장 요청을 검토할 때 주로 확인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작업중지가 계약·작업계획서의 기준(기온, 체감온도, 풍속, 적설 등)에 따른 것이었는가
- 그날의 기상청 관측자료와 현장 실측 온도 기록이 있는가
- 중지된 작업이 주공정선상에 있었는가, 아니면 여유시간 안에서 흡수될 수 있었는가
- 계약 공정표에 반영된 동절기 작업불능일을 넘어섰는가
- 발주자·감리에게 적시에 통지했는가

2. 실제 예시: 지상층 골조공사 5개 층

가상 사례입니다. 기준과 수치는 설명을 위해 가정한 값입니다.

12월 중순부터 1월 초까지 지상 6~10층 골조공사(층당 사이클 7일)를 진행한 현장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계약 공정표에는 이 기간의 동절기 작업불능 2일과 층당 보온양생 3일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항목	계약 당시 계획	실제 진행
공정 범위	6~10층 골조 5개 층	5개 층 (변경 없음)
층당 사이클	7일 (보온양생 3일 포함)	한파 영향 3개 층은 9일 (보온양생 5일)
작업중지일	2일 (동절기 작업불능일 반영)	6일 (일평균기온 –10°C 이하 등 작업중지 기준 해당)
소요 기간	5 × 7 + 2 = 37일	2개 층 × 7 + 3개 층 × 9 + 6 = 47일
차이	-	**10일 증가**

바차트 공정표에는 "37일 → 47일"이라는 결과만 남습니다. 그러나 기준과 기록이 연결되어 있으면 10일을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구분	기간	계약 반영 여부	협의상 의미
작업중지일 증가	4일 (6일 – 계약 반영 2일)	반영분 초과	작업중지 기준 해당 기록과 통지가 있으면 공기연장 검토 대상
보온양생 연장	6일 (3개 층 × 2일)	반영분(층당 3일) 초과	실측 온도와 양생 강도 확인 기록이 근거
합계	**10일**	-	**주공정 해당 여부 확인 후 준공일 영향 산정**

- 실제 작업중지일 6일 가운데 2일은 계약 공정표에 동절기 작업불능일로 이미 반영되어 있던 기간이므로 청구 대상에서 빼야 합니다. 이 2일을 빼지 않고 작업중지 6일 전체에 보온양생 연장 6일을 더해 12일로 주장하면, 계약 조건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 전체 주장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 보온양생 연장은 작업중지가 아니므로 '멈춘 날' 기록만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층별 타설일, 양생 기간, 강도 확인 기록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 골조공사가 주공정선상에 있지 않고 여유시간이 남아 있었다면, 골조공사가 늦어졌더라도 준공일까지 늦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연장을 주장하기 전에 해당 공정이 준공일에 실제로 영향을 주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위 계산은 사유를 단순 합산한 예시입니다. 여러 사유가 겹친 경우의 영향 분석은 공정표 분석 방법론과 계약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비용도 같은 구조로 나눠야 합니다

같은 예시에서 열풍기, 보온덮개, 연료 등 보온·가열에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 층당 1,200만 원, 5개 층 합계 6,000만 원이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계약 내역에 동절기 보양비로 이미 3,000만 원이 들어 있었다면, 추가로 협의할 수 있는 금액은 실제 비용에서 계약 반영분을 뺀 3,000만 원입니다. 이와 별도로, 공사기간이 10일 늘어나면서 더 들어간 현장관리비 등 간접비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비용은 ① 계약에 이미 들어 있는 비용, ② 보온·가열 비용 등 한파 때문에 추가로 들어간 직접비, ③ 공사기간이 늘어나 생긴 간접비의 세 가지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공사기간이 늘어난 10일 동안의 현장 관리직원(공무·안전 담당 등) 급여는 ③의 간접비로 청구합니다. 이 직원들이 한파 대응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같은 급여를 ②의 직접비에 다시 넣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열풍기 운전·관리처럼 보온·가열 작업에 직접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는 ②에 넣고, ③에서는 빼야 합니다. 같은 비용이 두 항목에 중복으로 들어가거나 맞지 않는 항목에 잘못 분류되면, 그 항목뿐 아니라 청구 전체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4. 안전조치와 공정·비용 기록을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동절기 안전점검에서는 한중콘크리트 보온·양생계획, 화재 예방, 거푸집·동바리 등 가설구조물 관리를 주로 점검합니다. 이 기록을 안전점검에 대비하는 용도로만 남겨서는 안 됩니다. 안전을 이유로 작업을 멈추거나 양생 기간을 늘렸다면 다음 세 가지를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그 결정을 언제, 어떤 기준으로 내렸는지, 어느 공정이 며칠 늦어졌는지, 그 때문에 비용이 얼마나 더 들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한중콘크리트 양생 온도가 기준에 못 미쳐 거푸집 해체를 이틀 미뤘다면, 온도 측정기록과 해체 연기 결정, 그로 인해 늦어진 다음 층 골조 일정과 추가로 쓴 보온·가열 비용을 하나의 기록으로 묶어 두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전조치가 나중에 공기연장과 추가비용을 협의하는 근거가 됩니다.

예상되는 실무상의 고민

- 계약서나 작업계획서에 한파 작업중지 기준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가
- 기상청 관측소 자료와 현장 실측 온도가 다를 때 어느 값을 근거로 제시해야 하는가
- 계약 공정표에 동절기 작업불능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 반영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 작업중지는 아니지만 생산성이 떨어진 날을 어떻게 기록하고 설명할 것인가
- 보온·가열 등 동절기 비용 중 계약 내역 반영분과 추가분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한파 공기연장 사유가 명시된 것이 계약상 공기연장·비용 청구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협력업체의 작업중지·양생 기록을 원청 기록과 어떻게 일치시킬 것인가

이번 달 실무 포인트

1. 작업중지 기준을 미리 문서로 정할 것

기온, 체감온도, 풍속, 적설 등 공종별 작업중지 기준을 작업계획서에 정하고 감리 확인을 받아 둡니다. 기준이 미리 있어야 그날의 중지가 '판단'이 아니라 '기준 적용'이 됩니다.

2. 기상자료와 현장 실측을 함께 남길 것

가장 가까운 기상청 관측소 자료와 현장 실측 온도(타설 부위·양생 내부 포함)를 시간대별로 기록합니다. 두 자료가 다르면 차이를 그대로 남겨 둡니다.

3. 작업중지 지시와 통지를 당일 남길 것

누가, 언제, 어떤 기준에 따라 어느 층·부위의 어떤 작업을 중지했는지 기록하고, 발주자·감리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작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도 재개 시점과 재개를 판단한 근거를 함께 남깁니다.

4. 계약 반영분부터 확인할 것

계약 공정표·공기 산정자료에 반영된 동절기 작업불능일과 내역서의 동절기 보양비를 먼저 확인합니다. 협의 대상은 이 반영분을 넘어선 부분입니다.

5. 보온양생 기간과 비용을 층별·부위별로 기록할 것

타설일, 보온 방식, 양생 기간, 강도 확인 결과, 연료·장비 사용량을 층별로 남깁니다. 비용은 계약 반영분과 추가분을 나눠 관리합니다.

6. 동절기 공정 재계획은 승인 절차를 거칠 것

한파로 공정을 조정했다면 변경 공정표를 제출하고 승인 또는 협의 결과를 문서로 남깁니다. 승인받지 않은 공정 변경은 나중에 지연 책임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이번 달 참고자료

1. 동절기 작업중지·재개 기록표

작업중지 기준, 기상청 자료와 현장 실측 온도, 작업중지 지시와 통지, 재개 판단을 작업중지가 발생한 날마다 한 줄로 정리하는 양식입니다. 그날의 작업중지가 기준에 따른 것이었음을 보여 주는 기본 근거로 활용합니다.

바로가기 >

2. 한파 영향 공정·생산성 분리표

한파로 늘어난 기간을 작업중지일, 보온양생 연장, 생산성 저하로 나누어 공정별로 정리하는 양식입니다. 계약에 이미 반영된 기간을 빼고 협의할 기간을 산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바로가기 >

3. 동절기 추가비용 관리대장

보온·가열 비용을 비롯해 제설, 방한용품과 난방 휴게시설, 생산성 저하에 따른 추가 투입 인력 등 한파로 늘어난 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하는 양식입니다. 항목마다 계약 내역 반영분과 실제 투입액을 나누어 적고, 그 차이를 추가비용 협의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공기연장 간접비와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에도 활용합니다.

바로가기 >

마무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한파가 공사기간 연장 사유로 명시된 것은 시공사에게 분명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도 더 분명해졌습니다. 협의에서 인정받는 것은 추위 그 자체가 아니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작업을 멈추고 그로 인해 늘어난 기간과 비용을 기록으로 남긴 현장입니다.

올겨울 현장에서 매일 남기는 기온 기록, 작업중지 지시와 통지, 양생 기록, 추가비용 대장이 내년 봄 공기연장과 추가비용 협의의 근거가 됩니다. 같은 한파를 겪더라도, 기준을 정하고 그날그날 기록을 남긴 현장과 그렇지 않은 현장은 협의 결과에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이번 뉴스레터와 별첨이 각 현장의 동절기 기록 체계를 점검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련구성원

김용호

변호사

02-316-4202
yhokim@shinkim.com

이승수

변호사

02-316-4341
sslee@shinkim.com

최혁준
변호사

02-316-4507
hjchoi@shinkim.com

안헌준
변호사

02-316-1640
hjoahn@shinkim.com

여진아
변호사

02-316-1781
jahyeo@shinkim.com

이동희
수석전문위원

02-316-1763
dheelee@shinkim.com

고윤섭
전문위원

02-316-1862
ysko@shinkim.com

박길범
연구위원

02-316-1737
gbepark@shinkim.com

Copyright SHIN & KIM LLC. All rights reserved.